

의 안 포 함	제2394호~제2395호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2023. 7. 14.(금) 10:00
제35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

검 토 보 고 서

안건 : 2건(개정규칙안 2)



의회운영위원회
전문위원 안 광 수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94호
- 제출일자 : 2023. 7. 4.
- 제출자 : 장성군의회의회장(서춘경 의원)
- 회부일자 : 2023. 7. 7.

2. 제안이유

-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정비 및 상위법령(지방자치법)의 변경된 인용 조문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규칙의 목적 약칭 삭제(안 제1조)
 -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서 약칭 삭제
- 약칭 반영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(안 제2조)
 - 장성군의회의회장 약칭 반영
 -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반영(법 제26조제6항→법 제32조제6항)

4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6항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규칙안은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정비와 상위법령의 변경된 인용 조문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95호
- 제출일자 : 2023. 7. 4.
- 제출자 : 장성군의회의회장(차상현 의원)
- 회부일자 : 2023. 7. 7.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 확대(안 제2조 제4호, 제5호)
 - (신설) 제4호 “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 제1항제4호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”
 - (신설) 제5호 “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”
- 간사 변경(안 제9조)
 - (개정 전) “의회사무과장”
 - (개정 후) “의회사무과 담당업무팀장”
-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 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 및 변경(안 제12조 1항)

- (삭제) “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”
- (변경) “1명” → “전원 또는 한 명”

4. 관련근거

-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의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의안 번호	제2396호 ~ 제2399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2023. 7. 14.(금) 10:00
제352회 임시회 제1차 행자위

검 토 보 고 서

안건 : 4건(조례안 3, 동의안 1)



행정자치위원회
전문위원 백윤석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96호
- 제출일자 : 2023. 7. 4.
- 제출자 : 장성군의회회장(심민섭 부의장)
- 회부일자 : 2023. 7. 7.

2. 제안이유

-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, 군수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(안 제4조~제5조)
-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·운영, 위탁(안 제6조~제7조)

4. 관련법령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15조의2(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)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(문화·예술활동의 차별금지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97호
- 제출일자 : 2023. 7. 5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장)
- 회부일자 : 2023. 7. 7.

2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2016년 열악한 단기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나, 장기요양기관 증가 및 장기요양사업 활성화로 단기보호사업 수요가 해소되어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」 폐지

4.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16년 열악한 단기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나, 장기요양기관 증가 및 장기요양사업 활성화로 단기보호사업 수요가 해소되어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98호
- 제출일자 : 2023. 7. 5.
- 제출자 : 장성군수(보건정책과장)
- 회부일자 : 2023. 7. 7.

2. 제안이유

- 군민의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고 집단생활하는 청소년과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, 그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.
- 아울러 상위법인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감염병 환자 등 신고 및 보고 의무자(안 제8조)
 - (현행) 의사, 한의사 → (개정)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등

현행	개정	비고
65세 이상 군민	60~64세 군민	“65세 이상”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임
50~64세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	50~59세 수급자, 국가유공자, 등록장애인	60~64세 군민 전체 지원
<신설>	14~18세 청소년	“6개월~13세 이하”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임

- “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” 대상 상위법 조항으로 변경 (안 제16조)

4. 관련법령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고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및 그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, 상위법인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 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99호
- 제출일자 : 2023. 7. 5.
- 제출자 : 장성군수(세무회계과장)
- 회부일자 : 2023. 7. 7.

2. 제안이유

- 장애인 직업재활시설,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 사업 추진 관련 부지 변경 및 건물취득 사항이 있어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부지 변경 및 건물취득

위치변경				사유	비고
당초		변경			
지번	면적	지번	면적		
장성읍 영천리 1449-1번지	3,273㎡	장성읍 영천리 1464-2, 3번지	2,998㎡ (감 275㎡)	당초 건립 예정지 부지매입 불가 (소유자 매도의사 없음)	

- 직업재활시설 건물 신축 : 지상1층, 연면적 528㎡

-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부지 변경 및 건물취득

위치변경				사유	비고
당초		변경			
지번	면적	지번	면적		
장성읍 영천리 1449-2번지	1,947㎡	장성읍 영천리 1464-10번지	2,641㎡ (증694㎡)	당초 건립 예정지 부지매입 불가 (소유자 매도의사 없음)	

- 주간보호시설 건물 신축 : 지상1층, 연면적 500㎡

4. 공유재산 관리계획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필지수 / 동수	면적	추정가격	비고
계		2 필지 / 1 동		4,100,000	
취득	토지매입	2 필지	2,998	2,000,000	기 승인
	건물신축	1 동	528	2,100,000	

5. 법적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7조
- 「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5조 및 제12조

6. 검토의견

- 본 변경동의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, 주간보호시설의 건립 부지 변경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7. 첨부서류 : 생략

의 안 포 제	제2400호~제2402호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2023. 7. 17.(월) 10:00
제352회 임시회 제1차 산건위

검 토 보 고 서

- 안건 : 3건(제정조례안 3)



산업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안광수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400호
- 제출일자 : 2023. 7. 5.
- 제출자 : 장성군수(재난안전과장)
- 회부일자 : 2023. 7. 7.

2. 제안이유

- 안전문화운동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안전보안관의 위촉 등(안 제3조)

-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성별·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
 - 재난안전 분야 단체 회원 및 해당 분야 대학의 교수 혹은 전문가
 - 국가,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
 - 지역 공공기관, 학교 등 추천 직원 및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군민
-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3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

○ 안전보안관의 임기 (안 제4조)

- 안전보안관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, 안전활동실적에 따라 재위촉

○ 안전보안관의 활동 (안 제5조)

-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,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
- 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

○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(안 제8조)

-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
- 활동 중 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지원

4. 관련근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(안전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문화운동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401호
- 제출일자 : 2023. 7. 5.
- 제출자 : 장성군수(재난안전과장)
- 회부일자 : 2023. 7. 7.

2. 제안이유

-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하 공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지원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 - 풍수해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하여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함.
-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(안 제6조)
 -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곤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수 있다.
 -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매년 수립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에 따른다.

○ 홍보 등(안 제7조)

- 풍수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-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4. 관련근거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조 2항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402호
- 제출일자 : 2023. 7. 5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건설과장)
- 회부일자 : 2023. 7. 7.

2. 제안이유

-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과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농촌협약 조건(안 제8조)

- 협약을 담당하는 “농촌협약위원회”, “전담조직(부서)”, “중간지원조직”, “행정협의회”를 구성·운영할 것

○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9조)

- 협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·자문·심의
 - 농촌협약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
 -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
 -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
 - 예비계획 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·자문

○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기능(안 제15조)

- 중간지원조직*으로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
*중간지원조직 :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조직

○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구성(안 제16조)

- 센터장, 사무국장, 사무원 등

○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운영 등(안 제17조)

-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

○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(안 제23조)

-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

4. 관련근거

- 「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
- 「농어촌정비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과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